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

##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

### 심사보고서

2022. 6. 21.

운영위원회

#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2년 6월 8일

나. 발 의 자: 이규선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: 2022년 6월 16일

라. 상정일자: 제23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(2022. 6. 20.) 상정 의결

#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이규선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 개정('22. 1. 13. 시행)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, 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총칙에 관한 사항(안 제1조)

-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사항(안 제2조~제8조)
- 조기퇴직수당에 관한 사항(안 제9조~제15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- 본 안건은 「지방자치법」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영등포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제정규칙안임.
- 주요내용은
  - 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청대상자(제2조),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(제3조), 신청절차(제4조), 심사대상(제5조), 심사기준(제6조), 지급 절차(제7조), 수령권 승계(제8조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  -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청대상자(제9조), 근속연수의 계산(제10조), 지급계획 수립·시행(제11조), 지급 신청(제12조), 심사대상(제13조), 심사기준(제14조), 지급 절차(제15조) 등을 규정함.
-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으로 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에서 명예퇴직수당과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절차 등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「지방공무원법」 등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내 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취지에 부합하며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# 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

## 지급에 관한 규칙안

(이규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80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: 2022년 6월 일

발의자: 이규선 의원 외 3명

### 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및 그 지급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나.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및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(안 제3조, 제4조)
- 다.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, 제6조)
- 라.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, 제8조)
- 마.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, 제10조)
- 바.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 (안 제11조)
- 사.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, 심사대상, 심사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12조~제15조)

3. 제정안 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.

다. 입법예고 : 생략.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

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,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,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, 그 지급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장 명예퇴직수당

제2조(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) 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 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(이하 "공무원"이라 한다)으로서 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(이하 "수당지급규정"이라 한다)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.

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3조(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)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

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. 다만,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**제4조(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)**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에 명예퇴직원(별지 제2호서식)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국장(이하“사무국장”이라 한다)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.

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.

**제5조(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)**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. 이 경우 근속기간,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**제6조(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)**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·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, 「공무원연금법」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.

1. 상위계급의 공무원
2. 「공무원연금법」상 장기근속공무원
3. 해당 직급 장기재직공무원
4.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

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

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.

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 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**제7조(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)** 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,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.

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, 지급장소, 신청서류,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사무국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8조(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)** ① 명예퇴직수당은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,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 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을 그 유족이 승계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,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「공무원연금법」의 규정에 의한다.

### 제3장 조기퇴직수당

**제9조(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)**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는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.

**제10조(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)**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(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)으로 하되, 정직·휴직·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.

**제11조(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 수립·시행)** ① 의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그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 발생한 경우 그 정원이 초과된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  
② 제1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, 지급신청기간,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**제12조(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)**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(별지 제3호서식)에 조기퇴직원(별지 제4호서식)을 첨부하여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.

**제13조(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)**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(계)급별 정원을 초과한 인원수에 따라 직(계)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, 정원을 초과한 인원수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(계)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 인원의 범위 안에서 같은 직렬의 바로 위 직(계)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.  
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.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

제14조(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)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  
· 결정함에 있어서는 정원을 초과한 인원이 발생한 직(계)급의 재직자  
를 우선하여 선발한다. 다만, 동일 직(계)급의 정원을 초과한 인원수에  
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  
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.

1. 해당 직(계)급의 장기근속공무원
2. 「공무원연금법」상 장기근속공무원
3.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

제15조(조기퇴직수당 지급 절차 등)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  
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(제3조 관련)

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	명예퇴직 예정일
1. 1. ~ 1. 15.	2. 28.
3. 1. ~ 3. 15.	4. 30.
5. 1. ~ 5. 15.	6. 30.
7. 1. ~ 7. 15.	8. 31.
9. 1. ~ 9. 15.	10. 31.
11. 1. ~ 11. 15.	12. 31.

비고 : 1.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.

- 해당 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와 명예퇴직원(별지 제2호 서식)을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.



작성방법

1.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을,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전의 소속기관을 적습니다.
2. ③란은 해당란( )에 "√"표시를 하고, 특정직공무원(소방·교육 공무원 등)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( )에 적습니다.
  - \*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,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일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적습니다.
3. ④란을 적을 때에는,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신분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 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직전의 직급(계급)·직무군(전문경력관의 경우)·호봉을 적습니다.
4. ⑨란은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3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적되,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
5.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"√"표시를 하고,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확정일과 형량을 적고,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일과 선고형을 적습니다.
6. ⑫ ~ ⑰란은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관·연금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이 직접 적습니다(⑭란은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 근무기관의 인사담당관이 적습니다).
7. ⑫란은 해당란에 "√"표시를 합니다.
8. ⑬란은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에 따라 해당 정년을 "세" 또는 "년"으로 적습니다.
9. ⑮란은 명예퇴직 예정일의 다음 달 1일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습니다.
10. ⑰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 파악·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 공무원이 작성하되("√" 표시), 직급과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.

## 명 예 퇴 직 원

---

1. 소 속:
2. 직 위:
3. 직급·계급:
4. 성 명:

○ 명예퇴직 사유:

※ 명예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,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, 직위, 시기(기간) 등을 명시합니다.

○ 명예퇴직 신청일:

○ 명예퇴직 희망일:

※ 명예퇴직 희망일은 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시 명예퇴직 신청자만 적습니다.

---

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([ ]정기·[ ]수시) 명예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귀하

---

##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 신청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11조에 따름		
소속	공무원 구분	[ ] 일반직(양제 제외) [ ] 특정직( ) [ ] 별정직	직급·직무군 또는 상당 계급 (호봉)		
성명	(한글) (한자)	주민등록번호			
	주소 □□□□□□				
전화번호 (자택)	최초 임용일	년 월 일	근속기간	년 개월	
수당 청구액	산출내용				

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  
(서명 또는 인)

신청인

귀하

첨부서류	1.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. 다만,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 2. 조기 퇴직원(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(표준안)」 별지 제4호서식)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

확인    인사담당    (인)

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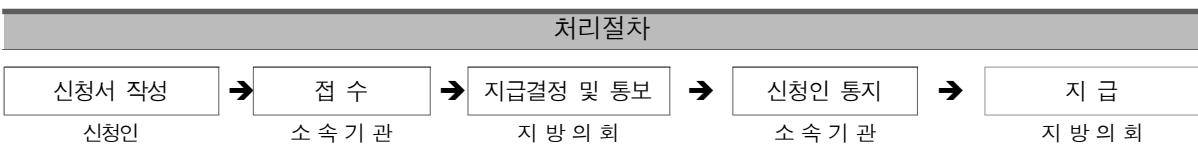
년 월 일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국장

직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   귀하

비고: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, 굵은 선의 확인란은 인사담당자가 적습니다.



## 조 기 퇴 직 원

---

1. 소 속:

2. 직 급:

(상당계급)

3. 성 명:

---

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귀하

---

---